

##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 
번호

141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- 법률 제5,097호(95. 12. 29) 및 대통령령 제15,034호('96. 6. 22) 호로 개정. 공포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'96. 6. 30일부로 시행되면서
-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대상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용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 개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제4조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이조와 관련된 별표의 조정가액별 수수료 산출표중 “알선, 조정”외에 “증거보전신청”을 추가하고
- 별표중 “분쟁조정신청수수료”를 “수수료”로, “환경오염피해청구액”을 “조정가액”으로 그 용어를 정립하였으며,
- 별표중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본 경우, 추후 산정이 가능하게 될 때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

□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□ 신.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□ 관련법령(발췌)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알선 또는 조정”을 “알선, 조정 또는 증거보전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알선, 조정”을 “알선, 조정, 증거보전”으로 한다.

『별표』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수 수 료 (제4조 관련)

신청별	조정가액별 수수료
알선신청	10,000원
조정신청	1.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: 10,000원 2.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: 1.의 수수료에 500백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. 조정가액 5천만원초과 : 2.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,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
조정절차 참가신청	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
증거보전신청	5,000원
* 비교 :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,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